

제2절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추진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10.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산적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 하였다.

-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급여종류가 확대되었고 급여수준이 증가 되었다.

- 주거급여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 하였으며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셋째,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였다.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

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강구하였으며,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넷째,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이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다음기준 이하인 가구

〈200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평가액(월)	36만원	60만원	83만원	105만원	119만원	135만원

- ※ 7인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마다 154,043원씩 증가
(7인 150만원, 8인 166만원...)

라.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라 함은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나 적용범위가 다음과 같아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가) 적용 대상자

- 노인, 중증장애인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60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함)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구청장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 (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가능)

나) 급여내용 : 일반수급자와 동일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 가) 적용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 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나) 급여내용 : 일반수급자와 동일

3) 의료급여의 특례

가) 적용 대상자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나,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 만성·회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나)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지원
 - 1종 : 51개 회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자
 - 2종 : 51개 회귀 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4) 교육급여 특례

(가) 적용 대상자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나) 급여내용 : 해당 학생 개인에 대하여 교육급여만 지급

5) 자활급여 특례

(가) 적용 대상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 중지
 - 해당자 개인에 대해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적용

6) 기타 타법령 지원 수급자

- 적용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등

마. 급여의 실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교육급여, (4)재산급여, (5)장제급여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 의료특례·교육특례·자활특례자 및 시설수급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내용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액(월)	324천원	536천원	738천원	928천원	1,056천원	1,191천원

※ 7인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5,620원씩 증가

- 급여방법 : 매월 20일기준 현금 지급 (계좌입금)

2) 주거급여

- 급여대상자 : 의료특례·교육특례·자활특례자 및 시설수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계좌입금)
- 급여내용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액(월)	33천원	42천원	55천원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 급여방법 : 매월 20일기준 현금 지급

3) 교육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중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한 자
- 급여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년1회), 학용품비(년2회), 부교재비(년1회)
- 급여방법 : 현금 지급(계좌입금)

4) 해산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 급여내용 : 출산여성에게 20만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시 10만원 추가)
(쌍둥이 30만원, 세쌍둥이 40만원...)
- 급여 방법 : 수급자 또는 그 세대주에게 지급

5) 장제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급여내용 : 의료급여1종은 구당 50만원, 의료급여2종은 구당 30만원 지급
- 급여방법 :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바. 자활급여

1) 목 적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2) 의의 : 조건부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조건부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 지급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3) 근로능력자(조건부수급자) 판정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무능력자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규정)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자 (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 장애인)

4) 조건부수급자 유형

취업 대상자	· 즉시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개인창업이 가능한 자 ·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
비 취업 대상자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자활공동체 참여, 공공근로기획 제공 등이 필요한 자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 특례기준에 의한 현황

[2003. 12. 31 기준]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비 고 (교육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3,947	7,632	3,762	7,344	185	288	1,123

※ 특례수급자 :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타법령지원자(북한이탈주민 등)

2) 근로능력에 의한 현황

총 수급자	근로 무능력자	근로 능력자	근로능력자 현황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과 제외자	자활급여 특례자
7,632	5,912	1,720	184	1,315	23

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신청

1) 목 적

- 도시영세민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

2) 내 용

- 융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신청자격
 - 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저소득주민으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융자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는자 또는 만35세이상의 1년이상 무주택 단독 세대주

- 선정제외 대상
 - 차량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승용차 소유자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제외)
 -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중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
(단, 배기량 1,000cc미만차량 소유자 제외)
 - 세대구성원의 소유차량(생업용, 장애인용, 소형승용 등 포함) 2대이상 소유자(단, 차량압류등으로 폐차,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제외)
 - 부동산 소유자(부동산 중 종중묘지등 환급성이 극히 낮은 토지 제외)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 대장상 대상부분이 주거용이 아닐 경우
나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가 있는 경우
 -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등의 소유로 사회 통념
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신청

1) 목 적

-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2) 내 용

- 융자금액 : 세대당 1,0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 남동구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 선정제외 대상
 - 불법적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역행하는 상행위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
 -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 정신질환 및 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차.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1) 목 적

-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2) 내 용

신청자격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지녀야 한다.

- 남동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 보호대상 모자가정, 부자가정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선정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미만인자
 - 생업용, 보철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

카. 저소득층 생업자금 신청

1) 목 적

-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2) 내 용

- 융자금액
 - 신용융자 : 무보증 1,200만원
(재산세 2만원이상, 연간소득600만원이상)
 - : 보증 2,000만원
(재산세 2만원이상, 연간소득 800만원이상)
- 담보융자 : 담보범위내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다음기준 이하인 자
 - 신용융자자 : 소득인정액의 150%
 - 담보융자자 : 소득인정액의 150%

2. 장애인 복지

가.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장애, 신장, 심장장애 등 10가지의 장애가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하며, 우리구의 2003년 등록장애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3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호흡기·간·안면변형·장루·간질장애인들이 추가)

1) 등록장애인 현황 (2003 12. 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뇌병 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계	11,909	7,418	1,176	1,000	678	933	67	261	316	60
1급	1,040	313	188	35	200	239	15	31	14	5
2급	1,958	636	43	288	265	306	33	138	241	8
3급	2,200	1,368	54	165	213	242	19	92	0	47
4급	1,732	1,406	77	178	0	70	0	0	1	0
5급	2,293	1,961	86	131	0	55	0	0	60	0
6급	2,686	1,734	728	203	0	21	0	0	0	0

2)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장애인담당)에 사진 2매(3×4cm)와 장애인등록신청서(동사무소비치)를 작성 함께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한 후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신청인이 치료를 받던 진료기관 등)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교부하고,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정부지원,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을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장애등급 표기)를 동사무소로 보내며(장애인이 직접제출 가능),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서를 확인한 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한다. 소요기간은 약 1개월이다.

나.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생활시설 장애인보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가) 장애수당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1급장애인, 2급장애인, 중복장애인 중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 3급에게는 월 60천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1,2급 중복장애인)에게 월 3만원씩 중증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장애아동부양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장애아동 보호자에게 1인당 월 50천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2종수급권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단, 의료급여 적용분에 한함)

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교과서대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2회)

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교부품목은 장애유형에 따라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을 교부하며, 2003년에 금년 교부품목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바)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대한주택공사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도모를 위해 시행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장애인용 수입용품 의료용구 관세 감면

- 관세법 제28조 6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사에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구가 수입될 때에 관세가 감면되는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적

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 장애인용 자동차에 표지를 부착하게 하여 주차편의제공,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 가스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003. 11월부터 보행상장애유무, 본인유무에 따라 차등발급)

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라)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2001. 7. 1부터 연차적으로 LPG세율 인상에 따라 장애인복지카드나 보호자카드를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대금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며 2004년도 지원액은 6월까지 210원/ℓ, 7월부터는 280원/ℓ 지원 예정이다.

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부랑인 보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가. 처리절차

1) 부랑인 보호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나 부랑인을 보호하여 입소대상자 특성에 따라 부랑인시설에 입소 조치한다.

2) 행여사망자 처리

행여사망자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확인하며, 연고자가 없을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청으로 처리 의뢰하게 된다. 처리 의뢰 접수 시, 구청장은 장의 대행업자인 “인천장의협회”에 화장을 지시하여 화장 후 인천공동묘지에 안치토록 한다.

4. 의료급여사업

가. 의의

의료급여사업은 1977. 12. 31 법률제3076호로 의료급여사업이 시행되면서 국가재정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대상자 종류

- 1)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등
- 2)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대상자 책정기준

1)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6개월이상 장기질환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지침에 의한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거 9등급 이하로 분류된 세대
(다만, 8등급으로 분류된 세대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장관이 요청한 세대
- 인간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세대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환자

2) 2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2003.12.31기준)

(세대/인원)

종별	총계 (A+B)	1 종							2종 (B)
		소계 (A)	수급자	국 가 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 탈주민	의사자 유 족	인 간 문화재	
계	4,181/ 8,175	2,785/ 4,429	2,539/ 3,854	214/ 508	8/29	21/29	1/3	2/6	1,396/ 3,746

마.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기준

(진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

- 1) 1종 : 진료비 급여부분의 100%
- 2) 2종 : 국가부담 80%, 본인부담 20%

바. 진료절차

- 1) 지침물 :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 2) 절 차 : 3단계로 하며, 1단계 진료를 받은 후 2단계 진료를, 2단계 진료를 받은 후 3단계 진료를 받아야 함. 2차 또는 3차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희망 진료기관에 제출한다.

사. 의료급여 대불 안내

- 1) 대 상 자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2) 범 위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한 경우 진료비중 급여 부분의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 20%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
- 3) 신청절차 : 진료기관(병원)의 확인을 받아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4) 상환방법 : 대불일로부터 3월 경과 후 분할 상환하며 무이자로 함.

- 10만원 미만 : 3회
- 10~30만원 미만 : 8회
- 30만원 이상 : 12회

아.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6급 장애인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지원 (단, 의료급여 적용분에 한함)

2) 지원내용

- 1차병원처방전이 없을 경우엔 750원, 처방전이 있으면 500원, 약국은 250원을 지원
- 2, 3차 진료기관 진료비는 의료급여 적용분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의 전액

5. 아동복지 증진

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3개소이며, 민간보육시설 110개소로 직장보육시설 3개소, 가정보육시설 43개소로 2003년도말 169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보육환경조성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297,471천원의 운영비를 지원 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지원시설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비고
총 계	2,297,471	1,215,957	540,757	540,757	
시설별지원	1,126,818	630,632	248,093	248,093	
아동별지원	1,170,653	585,325	292,664	292,664	

- 운영비보조금 지원중 시설별 지원은 공립 및 종교기관부설, 민간보육시설(장애아 및 영아전담) 13개 시설 종사자 10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며,
- 아동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1,140명에 대한 지원 금액임.

2)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정부법인)보육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정원	전화번호	면적(㎡)	비고
1	만월 어린이집	만수2동 5-377	143	466-0391	497.75	
2	남동 어린이집	간석3동 224-462	99	421-3377	397.1	
3	고잔 어린이집	고잔동 178-5	148	442-0550	700.18	
4	씨튼 어린이집	만수6동 1007	20	472-5004	227.61	
5	개나리 어린이집	만수4동 주공@ 216-102	14	465-2296	88.81	
6	남부 어린이집	구월1동 1232	126	463-8386	102.5	
7	목민 어린이집	만수2동 867-9	148	462-3795	518.17	
8	만수 어린이집	만수1동 1005	95	463-8167	162.17	

나.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정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가정 내에서 생활유지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생활여건상 소년소녀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운 청소년을 준소년소녀가정 세대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1) 2004. 1. 1현재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 84세대 113명

2)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현황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 방법은 생활보장법에 의한 주·부식비, 연료비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재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교통비지원, 전세대원에 대한 피복비, 영양급식비 지원 등의 법정지원 방법과, 월세 거주 세대에 대한 전세금 지원 및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등과 결연을 추진하여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통한 후원자 지원 등이 있다.

2003년도의 72세대 102명에 대한 보조사업(세대보호비, 영양급식비등)은 108,958원이 지원되었고, 후원자 결연지원은 40,428천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였고, 하계수련회비 5,112천원, 도시락비 34,650천원, 학원비 5,51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 및 명절 등에는 위안잔치를 개최하여 위로하고, 사회 각층의 정성어린 선물 등을 전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였다.

6. 여성복지 증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 및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가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할 강화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코자 관내 일반여성, 여성단체 회원 등 6,230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자녀의 학습능력향상 사고력 키우기, 자녀두뇌개발을 위한 전뇌교육,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가족과 함께 보는 아동극 공연)등을 실시하였고, 건전가요노래교실, 가족봉사체험캠프, 여성주간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점차 증대하는 여성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나. 여성복지상담 및 예방사업

1) 여성상담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구성원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요보호여성(미혼모, 저소득층 여성, 모자가정, 학대받는 여성 등)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상담실적

상담건수	조 치 실 적				
	선도귀가	시설알선	생계보호	상담조언	기 타
668건	25	10	14	493	126

2)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성적피해 예방교육

현대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성 가치관 확립 및 인격형성을 도모코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회교육적 관점에서 매년 학교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하여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또는 유기된 여성(남성)이 18세(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6세이하의 아동 394명에게 20,825천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모·부자가정 304세대에게 각 세대별 90천원씩 총 27,390천원의 월동용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추천, 직업훈련 실시, 결연 및 후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3. 12. 31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306세대 782명이다.

라.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관내 12개 여성단체장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각 여성단체별로 각 여성단체별 특색사업과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알뜰장터 운영으로 단체간 협력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단체 역할 정립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여성단체 회원 45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단체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단체별로 특색있고 전문적인 사업발굴 유도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전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 여성단체현황

단 체 명	회원수	단 체 명	회원수
계	2,174명		
녹 색 어 머 니 회	19명	자유총연맹여성회	530명
한국통일여성협의회	27명	적십자사부녀봉사회	180명
미 용 사 회	620명	대한주부클럽	20명
바르게살기협의회여성분과위원회	177명	주부환경연합	28명
소래포구상인번영회	104명	한 국 부 인 회	19명
전국주부교실	100명	새마을부녀회	350명

마.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을 해주는 재가봉사와 장애아어린이집 수업보조, 결식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봉사, 어린이학습지도, 물리치료 보조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1,216회 138명이 참여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7. 노인복지분야

가. 노인현황

2003년 12월말 우리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1,851명으로 전체인구 392,478명중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0.9%내외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 받으며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가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노인복지사업

1) 노인건강진단 실시

관내거주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2003년 9월 5일부터 10월 30일사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였다.

2) 경로연금 지급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1934.7.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 65세~79세는 매월 45,000원, 80세이상은 매월 50,000원을, 저소득노인 전액 지급자는 매월 35,000원을, 감액지급자는 매월 30,630원을 지급하여 연간 1,018,682천원을 지원하였다.

3) 경로수당 지급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분기 첫달에 해당금액을 신청대상자 통장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3,152,904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였다.

4) 경로의 달 행사 실시

매년 10월 한달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각 동별 계획에 의거 경로잔치를 개최

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복지증진 기여자를 선발하여 표창하였다.

○ 개최내역

- 일 시 : 2003. 10. 1. ~ 10. 31.
- 장 소 : 각동별 자체계획에 의거 노인잔치 시행
- 내 용 : 노인기에 경로잔치대회 24,000천원 지원

☐ 사회복지분야 특수시책으로는....

1)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개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외출하기 어려운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바깥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여 밝고 활기찬 세상을 보여 줌으로써 삶의 희망과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

☐ 장애인등록 현황(2003. 12월말 현재)

- 총 12,059명 『남 : 8,333명, 여 : 3,726명』

☐ 주요 추진사항

- 기 간 : 연중(분기별1회/연4회)
- 실 적 : 120명 / 2,303천원
- 방 법
 - 관람장소 및 코스의 다양화로 볼거리 제공 및 흥미유발
(에버랜드, 롯데월드, 한국민속촌, 서울종합촬영소등)
 - 가족 및 자원봉사자, 공무원 동행
 -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및 후원자 결연사업 병행 추진
 - 남동장애인복지관과 공동주관 운영